

2026. 8. 15
제 1742 호



법원
공보

법원행정처

법원공보

2026년 8월 15일(토요일)

제1742호

CONTENTS

●	규칙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107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1078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80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	1082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108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086
●	내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일부개정내규	1092
●	예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094
●	신법령 목록		1116
●	인사		1126

■ 규칙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270호 2026. 7. 29.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11제9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절차의 중지) 제2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의 대상인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심문절차) 법원은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5조(판결 공표 방식) 법원은 법 제44조의11제7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에서 공표할 매체의 종류·수, 공표의 내용·크기·시기·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71호 2026. 7. 29. 공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주소의 보정과 확인) 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장 부분 또는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할 때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3조”를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①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주소의 보정과 확인) 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장 부분 또는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할 때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신 설〉 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 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19조(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18조제1항 ----- ③ ----- 제2항 ----- 제23조제1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72호 2026. 7. 29. 공포)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을 “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 13. (생 략) ② (생 략)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 ----- ----- 법----- ----- -----. 1.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 (생 략) 3.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4. ~ 6. (생 략) ③ · ④ (생 략)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1조제4항 -----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73호 2026. 7. 29. 공포)

집행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집행관인원표 중 수원지방법원의 인원 “25”를 “26”으로, 안양지원의 인원 “8”을 “7”로, 제주지방법원의 인원 “5”를 “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집행관인원표		[별표]집행관인원표	
법 원	인 원	법 원	인 원
수원지방법원	25	수원지방법원	26
안양지원	8	안양지원	7
∫	∫	∫	∫
제주지방법원	5	제주지방법원	6
계	450	계	451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74호 2026. 7. 29. 공포)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중 5급 공무원과”를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 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중 5급 공무 원과 동액으로 한다.	제22조(여비의 기준) -----여 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75호 2026. 7. 29.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자격의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회”를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입시험은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제3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전산직렬 및 보안관리직렬

별표 6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1]

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관련)

급별	직군 직렬및 직류 과목	사법행정사무					
		법원사무	배점 비율 (%)	등기사무	배점 비율 (%)	조사사무	배점 비율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차시험 과목	1. 헌 법 2. 언어논리영역 3. 자료해석영역 4. 상황판단영역 5. 영 어 6. 한국사	0 동 일 합 0 0	1. 헌 법 2. 언어논리영역 3. 자료해석영역 4. 상황판단영역 5. 영 어 6. 한국사	0 동 일 합 0 0	1. 헌법 2. 민법 3. 형법 4. 영어 5. 한국사	동 일 합 0 0
	2차시험 과목	1. 행정법 2. 민 법 3. 형 법 4.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10 30 20 20 20	1. 행 정 법 2. 민 법 3. 상법(총론, 회사 편) 4. 민사소송법 5. 부동산등기법	10 30 20 20 20	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형 법 4. 소년법 5. 심리학, 사회사업 학, 교육학 중 1 과목	20 20 20 10 30
6급 및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차시험 과목	1. 헌법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시험 과목	1. 민법 2. 형법 3.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25 25 25 25			1. 가사소송법 2. 소년법 3. 형법 4. 심리학, 사회사업 학, 교육학 중 1 과목	25 25 25 25
8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차시험 과목	1. 헌법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헌법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시험 과목	1. 민법 2. 민사소송법 3. 형법 4. 형사소송법	25 25 25 25	1. 민법 2. 민사소송법 3. 상법 (총론, 회사편) 4. 부동산등기법	25 25 25 25	1. 심리학 개론, 사회사업학개론 중 1과목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60 20 20

급별	직군 직렬및 직류 과목	사법행정사무									
		법원사무		배점 비율 (%)		등기사무		배점 비율 (%)		조사사무	
2급·3급· 4급·5급 경력경쟁 채용등, 5급공개 경쟁승진 및전직시험	1차시험 과목	1. 헌 법		25							
		2. 행 정 법		25							
		3. 민사집행법		25							
		4. 부동산등기법		25							
	2차시험 과목	1. 민사법		50							
		2. 형사법		50							
5급경력 경쟁채용등, 5급일반 승진, 5급 공개경쟁 승진 및 전직시험	1차시험 과목									1. 친족상속법	40
										2. 가사소송법	30
										3. 소년법	30
	2차시험 과목									1. 가사소송법	30
										2. 소년법	30
										3. 심리학, 사회사 업학, 교육학 중 1과목	40
5급일반 승진시험	1차시험 과목	1. 민사법	민법		20	1. 민사법	민법		15		
			민사 소송법	40	20		민사 소송법	30	15		
		2. 형사법	형법		10	2. 형사법	형법		10		
			형사 소송법	20	10		형사 소송법	20	10		
		3. 민사집행법		20		3. 민사 집행법		20			
		4. 부동산 등기· 공탁	부동산 등기		10	4. 등기 실무	부동산 등기		20		
			공탁	20	10		상업 등기	30	10		
	2차시험 과목	1. 민사법	민법		30	1. 민사법	민법		25		
			민사 소송법	60	30		민사 소송법	50	25		
		2. 형사법	형법		20	2. 상법 (총론·회사편)		25			
			형사 소송법	40	20	3. 부동산등기법		25			

급별	직군		사법행정사무									
	직렬및 직류	과목	법원사무		배점 비율 (%)	등기사무		배점 비율 (%)	조사사무		배점 비율 (%)	
6급 및 7급 경력경쟁 채용등, 전직시험	1차시험 과목	1. 민사집행법 2. 부동산등기법	50 50	1. 민사법 2. 등기실무 3. 민사집행법	40 45 15	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40 30 30					
	2차시험 과목	1. 민사법 2. 형사법	50 50	1. 민사법 2. 상법 (총론·회사편) 3. 부동산등기법	50 25 25	1. 가사소송법 2. 소년법 3. 심리학, 사회사 업학, 교육학 중 1과목	30 30 40					
7급일반 승진시험	시험 과목	1. 민사법	민법	45	20	1. 민사법	민법	40	20	1. 친족상속법 2. 가사소송법 3. 소년법 4. 심리학, 사회사 업학, 교육학 중 1과목	20 30 30 20	
			민사 소송법		25		민사 소송법		20			
		1. 형사법	형법	25	10	2. 민사집행법		10				
			형사 소송법		15							
		3. 민사집행법	15		3. 등기 실무	부동산 등기	50	30				
4. 부동산등기법	15		상업 등기	20								
8급 및 9급 경력경쟁 채용등및 전직시험	1차시험 과목	1. 국어 2. 한국사 3. 영어	40 20 40				1. 법제대의 2. 국어 3. 한국사 4. 영어	25 25 25 25				
	2차시험 과목	법제대의	100				1. 심리학, 사회사 업학 중 1과목 2. 형사정책, 교육학 중 1과목	60 40				

※ 민사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 시험에서 불합격되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은 다시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 고,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제2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 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 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 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 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 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 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자격의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 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0조(전입시험) ① 국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 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전입시험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 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 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30조(전입시험) ①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위원회 ----- -----. ② 전입시험은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 -----.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 이 된 사람은 일반직 6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8 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4 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 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5급까지 승진임용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8 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소속기 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등) ① ----- ----- -----, ----- -----.

현 행	개 정 안
1.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	1.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전산 직렬 및 보안관리직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내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96호 2026. 7. 28.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선임비용”을 “선임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지대, 송달료, 우편비용 등: 그 실비액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지대, 송달료, 우편비용 등의 납부영수증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용 및 정부법무공단을 통한 지원의 경우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는 이 내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직무관련 소송 등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범위)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무관련 소송 등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u>선임비용</u>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정부법무공단이 정하는 비용에 따른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6조(지원 신청) 이 내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직무소송지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7조(위원회 상정·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직무소송 지원관은 제6조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u>다만, 정부법무공단을 통한 지원의 경우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 ③ (생 략)	제5조(지원 범위) ① ----- ----- ----- -----<u>선임비용</u> 등----- ----- -----. 1. ~ 4. (현행과 같음) 5. <u>인지대, 송달료, 우편비용 등: 그 실비액</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신청) 이 내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직무소송지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u>인지대, 송달료, 우편비용 등의 납부영수증</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위원회 상정·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 ----- ----- -----<u>.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용 및 정부법무공단을 통한 지원의 경우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예규

기간제 및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73호 2026. 7. 28. 결재)

기간제 및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속 공무원 등 근로자 현황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그 밖에 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의2제2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별지 제7-1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7-1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근무성적평정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제8의1호”를 “제8-1호”로, “순위명부”를 각각 “종합명부”로 한다.

제1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법원은 근로자의 평정점수가 50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8-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한다.

제25조제1항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제27조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 및 유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해당 주의 전부를 병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특수·임시건강진단(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및 제206조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10일”을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시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 제목 외의 부분)제7호 중 “1일”을 “3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 제목 외의 부분)제8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특별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특별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은 감액하지 않는다.

③ 각급 기관장은 근로자 근로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법원장의 근로기를 제공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연 최대 10일”을 “연 최대 10일[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이내]”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른다.

제30조의2제4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의 유급 일수를 가산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 치료 포함): 1년 이내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육아휴직”을 “육아휴직(입양한 자녀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6개월”을 “6개월로 하되,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3일”을 “6일”로, “1일”을 “2일”로 한다.

제34조의7제4항 단서 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11주”를 “15주”로, “5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원안내수당”을 각각 “민원안내수당·조정센터보조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액급식비”를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및 제8-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1호 서식 및 별지 제8-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00법원 소속 공무원 등 근로자 현황

20 . . . 기준

연 번	기관명	소속 부서	성명	성별	신분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직렬 및 직종	단계	담당업무	기능 및 자격	생년월일 (만 나이)	채용 방법	최초 근무일	계약 갱신일	계약 종료일	퇴직 사유	근속 기간	장애 여부

※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정의

가. 일례로 대체인력과 같이, 법원이 근로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아닌 근로자를 의미
나. 법원이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업체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근로자는 제외함 (고용사업주의 제량과 책임 하에 고용한 근로자를 법원이 사용하는 경우임)

※ 작성시 유의사항(월별 작성 및 제출)

- 가. 글자크기, 여백, 표 내부의 간격 등을 절대 수정하지 말고, 위 양식을 그대로 활용, 내용이 너무 많을 경우 별지 활용 가능
나. 모든 현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다. 항목별 작성 내용 (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함)
- 기관명: 공무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가 채용된 각급 기관
- 소속부서: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

- 신분: 근로자의 신분을 공무원직과 기간제로 구분하여 기재함
-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사유(ex, ①일시·간헐적 업무, ② 휴직 등에 대한 결원 대체), 대체 인력 등 기간제의 경우에는 대체근무 유형(ex, 공무원직 대체/공무원 대체) 및 축탁직 여부(O, X)를 기재함
- 직렬 및 직종: 근로자의 직렬을 「기간제 및 공무원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환경관리직(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 행정지원직(사무보조원, 민원안내원 등), 기술지원직(시설관리원), 기타(전문직 등), 청원경찰로 나누어 기재하고 각 직렬에 따라 직종을 세분화하여 기재함
- 단계: 공무원직 근로자 및 축탁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작성 시점 단계급(호봉)을 기재함
- 담당업무: 근로자의 업무분장을 기재함
- 기능 및 자격: 근로자가 작성시점 보유한 자격사항(ex, 전기기사, 위험물안전관리자, 워드프로세서 등)을 기재함
- 채용방법: 근로자의 채용형태를 신규채용 및 직접고용 전환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최초 근무일 및 계약 종료일: 법원에서 최초로 근무한 시기 및 현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기간을 기재하고, 계약을 갱신(연장)한 경우 최종 계약 종료일을 기재함
- 계약 갱신일: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갱신(연장)한 경우 또는 정년에 도달한 자 중 계속근로를 희망하여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이 시작하는 일자리를 기재함
- 퇴직사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또는 사망, 해고로 구분하여 기재함
- 장애여부: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기재함

장애인 근로자 명부

20 . . . 기준

연번	기관명	소속 부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장애인정 구분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중증 여부	중증 2배수 인정 여부	장애 인정일	입사일	퇴사일	근무 직종	장려금 및 지원금			담당자
														명칭	지급기간	금액	

① 기관명: 장애인 근로자 소속 기관명을 입력

② 소속부서: 장애인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부서

③ 장애인정 구분: 1.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상이등급해당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구분하여 기재함

④ 장애유형: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정신장애, 8. 자폐성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장애, 14. 장루·요루장애, 15. 뇌전증장애, 16.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기재함

⑤ 중증여부: 1. 중증 장애, 2. 경증 장애로 구분하여 기재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⑥ **중증 2배수 인정 여부:** 1. 여(중증장애인 중에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2. 부(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장애인 근로자)

⑦ **근무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중에서 해당 내용을 기재

⑧ **임금:** 장애인 근로자의 최종 월 급여액을 작성

⑨ **장려금 및 지원금:**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명칭과 지급기간, 금액을 작성

※ 청원경찰 포함, 상시 근로자에 제외되는 행정인턴 및 임용대기자 제외

장애분류 및 등급현황(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유형	장애 등급							등급	
	1	2	3	4	5	6	7		
지체장애								※ 음영처리 된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표시한 것이며 사선은 해당등급이 없음을 나타냄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 지체장애인3급 중 음영 표시된 부분은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3급의 경우에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언어장애								※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는 03.7.1일부터 장애범주에 추가	
지적장애								※ '10.1.1부터 호흡기, 뇌전증장애인의 경우 3급 까지 중증 인정범위 확대	
정신장애								※ '10.1.1부터 폐를 이식 받은 사람의 경우 호흡기장애5급(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국가유공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관률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 본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

※ 본 서식은 표준안이므로 근로시간,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여 사용가능

○○○○의 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만 세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0 . . .		

2.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단,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

※ (수습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습 중에 있는 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습 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활용 가능]

3.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 장소(부서):

○ 업무내용: (예시) 기관내 시설물의 유지관리(기계, 전기, 건축 등을 포함), 승강기 유지관리, 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청소, 조경, 안내, 경비 등에 관한 업무로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 휴게시간: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 교대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 형태 및 시간 등을 반드시 기재

※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 근무요일 및 근무요일별 근로시간을 기재

구 분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일근 근로자) 매주 __요일부터 __요일까지로 하며,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일요일(주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교대 근로자) 각급 법원에서 운영하는 교대 근무형태 등을 명시

- 휴일

-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5월 1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 교대근로자는 근무형태에 따라 1주 중 1일(비번일 등)을 주휴일로 함

6. 휴가

-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 및 「기간제 및 공무원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임금

- 임금은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현업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민원안내수당, 조정센터보조수당, 직책수당 및 선임수당(해당자에 한함), 법정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 ※ 교대근로자는 기본급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일근로자와 다르며(각급 법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산정함),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짐(예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일근로자는 209시간, 교대 근로자는 교대 근무형태에 따라 상이)
- 임금은 매월 5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8. 해고 등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 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2회 이상 4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9. 준수사항

근로기간 중 습득한 업무와 관련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일 일

(사용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생년월일: (전화:)
 성 명: (서명 또는 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확인〉

교부일시:	수령자:	(서명)
-------	------	------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재 직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 소						
재 직 사 항	소 속						
	직 종						
	재 직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 지			
용 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 인

[별지 제7-1호 서식]

제 호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 소				
경 력 사 항	재 직 기 간			직 종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 무 연 한	년 월	직종			
퇴 직 사 유				퇴직연월일	
용 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위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 인

[별지 제8호 서식]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평가대상기간: . . . 부터 . . . 까지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현 소속 근무시작일	최초계약일	담 당 업 무

1.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 [평정자가 작성함]

연번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내 용	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20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가 우수하다.	
4	추진력	2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인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5	팀워크	2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총 점				

2. 종합평가 및 의견 ※ 평가등급(4단계): 탁월(81~100), 우수(61~80), 보통(41~60), 미흡(40점 이하)

총점 및 등급	총점	평가등급	
평정자 의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의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8-1호 서식]

평정단위별종합명부

○평정단위기관명:

○평정대상직급: ○○○ 근로자

○평정대상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성명	근무부서	직책 또는 담당업무	평가등급(점수)	비고
총 ○명				

※ 확인·평정자

구분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일자
확인자					
평정자					

[별지 제8-4호 서식]

근로자 근무성적평정 결과 통보서

평정대상	성 명		생년월일	
	직종		근무평정 기 간	2000.00.00. ~ 2000.00.00.
	담당 업무			
근무평정 결과				
근무평정 사유				

「기간제 및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제7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 인

○ ○ ○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리부서장의 근로자 현황 제출 등) ① (생 략) ②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속 근로자 채용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매 분기 기준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로자 현황을 매 분기 말 10일 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의 소속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매년 12월 말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부서장의 근로자 현황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속 공무원 등 근로자 현황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10조(채용절차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제10조(채용절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 공무원 등 근로자 공채 채용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의2(근무경력 인정) ① (생 략) ② 근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공무원 근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근무경력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7-1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
제18조(증명서 발급)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7-1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 ③ (생 략) 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100분의 20, 우 100분의 40, 양 100분의 30, 가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법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근무성적평정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 채용권자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 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의1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이 다양하여 전체 순위명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종별 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⑥ (생 략) 〈신 설〉 제25조(휴일) ① 관리부서장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한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교대제 근무편성표상 1주 중 마지막 비번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 ④ (생 략) ⑤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임신부의 출산 및 유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신 설〉 〈신 설〉 ⑥ ~ ⑧ (생 략) 제28조(병가) ① ~ ④ (생 략) ⑤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⑤ ----- ----- 제8-1호 -- ----- 종합명부----- ----- 종합명부--- ----- 종합명부-----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원은 근로자의 평정점수가 50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8-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한다. 제25조(휴일) ① ----- ----- 노동절-----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 및 유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8조(병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해당 주의 전부를 병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⑥ (생 략) 제29조(공가) 소속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 3. (생 략) 4.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에 의한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 ~ 8. (생 략) 제30조(특별휴가) 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 1. · 2. (생 략) 3. 배우자의 출산: 10일 4. ~ 6. (생 략)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1일 8. 입양: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 설〉 〈신 설〉 제30조의2(가족돌봄휴가) ① 관리부서장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공가)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특수·임시건강진단(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및 제206조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 ~ 8. (현행과 같음) 제30조(특별휴가)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시 25일) 4. ~ 6. (현행과 같음) 7. ----- 3일 8.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② 제1항의 특별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특별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은 감액하지 않는다. ③ 각급 기관장은 근로자 근로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법원장의 근로기를 제공한다. 제30조의2(가족돌봄휴가) ① ----- ----- ----- ----- -----

현 행	개 정 안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무급 포함 연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 략) ③ 자녀를 돌보기 위해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휴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6개월 이내 2. (생 략)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이내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6개월 ② · ③ (생 략)	----- 연 최대 10일[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이내]의 범위 내에서 -----. ② 제1항의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른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의 유급 일수를 가산한다. 제33조(휴직) ① -----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 치료 포함): 1년 이내 2. (현행과 같음) 3. 「남녀고용평등법」----- 4.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입양한 자녀 포함): ----- 5. ----- ----- 6개월로 하되,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 ----- ----- ----- 6일 ----- ----- 2일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7(임산부의 보호) ① ~ ③ (생 략)	제34조의7(임산부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④ ----- ----- ----- ----- 「모자보건법」 ----- -----.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 ----- 15주 ----- 10일----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임금은 기본급 및 약정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책수당·선임수당·현업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민원안내수당)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구성되며, 법정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7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 ----- -----민원안내수당· 조정센터보조수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직책수당·선임수당·현업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민원안내수당으로 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 정액 급식비·명절휴가비----- -----민원안내수당·조정센터보조수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신법령 목록 (2026. 7. 16. ~ 2026. 7. 31.)

법 률

법률제21856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 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1283 (별권1)	2026. 7. 21.	2
-----------	---	----------------	--------------	---

조 약

조약제263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개정	21286	2026. 7. 24.	4
----------	----------------------------------	-------	--------------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50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82	2026. 7. 20.	4
대통령령제3650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650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83	2026. 7. 21.	4
대통령령제36509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6510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36511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651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365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36514호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36
대통령령제36515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3651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36517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9
대통령령제36518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36519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1
대통령령제36520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52
대통령령제3652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36522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
대통령령제36523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	"	56
대통령령제36524호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86	2026. 7. 24.	14
대통령령제3652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88	2026. 7. 28.	4

대통령령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	21288	2026. 7. 28.	7
대통령령제36527호	국방방첩본부령	"	"	10
대통령령제36528호	국방보안지원단령	"	"	15
대통령령제36529호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36530호	계엄사령부직제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36531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3653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36533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3653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34
대통령령제3653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3653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3653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36538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36539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
대통령령제365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3654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7
대통령령제36542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365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51
대통령령제3654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90 (별권1)	2026. 7. 30.	2
대통령령제3654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
대통령령제3654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365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654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21290 (별권1)	2026. 7. 30.	8
대통령령제3655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0

총리령

총리령제213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82	2026. 7. 20.	15
총리령제2134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83	2026. 7. 21.	57
총리령제213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8
총리령제213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9
총리령제2138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7
총리령제2139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8
총리령제214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9

부 령

교육부령제388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81	2026. 7. 16.	4
행정안전부령제62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7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82	2026. 7. 20.	17
고용노동부령제47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83	2026. 7. 21.	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7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3
교육부령제389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5
교육부령제39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7
국방부령제121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8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5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9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51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	"	80
농림축산식품부령제78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4
문화체육관광부령제63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5
문화체육관광부령제64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7
문화체육관광부령제641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3
법무부령제112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4
보건복지부령제118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95

보건복지부령제119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83	2026. 7. 21.	96
보건복지부령제1191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8
산업통상부령제18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9
재정경제부령제40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120
재정경제부령제4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121
해양수산부령제80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2
행정안전부령제63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3
행정안전부령제63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1284	2026. 7. 22.	4
보건복지부령제1187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 중 정정	"	"	6
성평등가족부령제13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85	2026. 7. 23.	3
교육부령제2026-391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21286	2026. 7. 24.	21
국토교통부령제160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87	2026. 7. 27.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3호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	"	15
해양수산부령제810호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	"	23
고용노동부령제4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88	2026. 7. 28.	53
국토교통부령제1608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21288	2026. 7. 28.	57
국토교통부령제160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289	2026. 7. 29.	3
보건복지부령제1193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
성평등가족부령제14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행정안전부령제63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 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	"	7
국가보훈부령제70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21290	2026. 7. 30.	4
국가보훈부령제71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국가보훈부령제7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국가보훈부령제73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
국가보훈부령제7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
국가보훈부령제75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9
국토교통부령제160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
국토교통부령제160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3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3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	"	43
해양수산부령제811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	"	4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4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6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119
보건복지부령제1192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 행규칙」일부개정령	"	"	13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호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291	2026. 7. 31.	4
재정경제부령제4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행정안전부령제634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14
행정안전부령제6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16

인사

■ 인사발령 법 제117호 | 2026. 7. 9.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윤서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7. 13.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7. 13.부터 2026. 10. 11.까지 휴직을 명함

■ 인사발령 법 제118호 | 2026. 7. 1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대법관			
	대법원 대법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보함
		(2026. 7. 14. 자)	

■ 인사발령 법 제119호 | 2026. 7. 1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임 명(연 임)			
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강민수	판사에 연임함
나. 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노지환	판사에 연임함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상희	판사에 연임함
	"	김성대	"
	"	최지연	"
	"	황일준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민욱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용욱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천수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혜민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이강호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경인	"
	"	남요섭	"
	"	박기범	"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언지	"
	"	정주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영희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현성	판사에 연임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우제천	"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동욱	"
	청주지방법원 판사	임섿별	"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채영	"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진아	"
	부산회생법원 판사	구경모	"
	울산지방법원 판사	임미경	"
	광주지방법원 판사	차기현	"

(2026. 8. 1. 자)

■ 인사발령 법 제120호 | 2026. 7. 1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송인석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유병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6. 7. 21. 자)			

■ 인사발령 법 제121호 | 2026. 7. 1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장석조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숙희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2026. 7. 31. 자)			

■ 인사발령 법 제122호 | 2026. 7.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박상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성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6. 8. 23. 자)			
나. 고등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철순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18. 자)			
다. 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덕완	부산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8.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차은주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	강희구	서울회생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동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26. 8. 18. 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윤봉학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23. 자)			
2.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한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24.부터 2027.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인해	2026. 8. 23.부터 2027.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한울	"

3.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찬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0.부터 2027. 8. 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태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24.부터 2026. 9.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부장판사	여현주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4.부터 2027. 5. 28.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24.부터 202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김지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23.부터 2027. 2. 22.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진영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7.부터 2027. 8. 6.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황성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6.부터 2027. 2. 5.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강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7.부터 2027. 8. 6.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원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23.부터 2026. 11. 2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범석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23.부터 202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	이승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3.부터 2027. 1. 29.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대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3.부터 2027. 2. 2.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3.부터 2027. 8. 12.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김경윤	2026. 8. 1.부터 2027. 2. 1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2026. 8. 6.부터 2027. 8. 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동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8.부터 2027. 2. 21.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호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8.부터 202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미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8.부터 2027. 2. 17.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주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28.부터 2027. 1. 27.까지 휴직을 명함
	"	정명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3.부터 2027.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승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8.부터 2027. 5. 20.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소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3.부터 2027. 1. 20.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병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1.부터 202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오형석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8.부터 2026. 12. 3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31.부터 2027. 8. 30.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재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부터 2027. 8. 31.까지 휴직을 명함
	"	임민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3.부터 202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나재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4.부터 2027. 2. 3.까지 휴직을 명함
	"	정일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0.부터 2027. 8. 9.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규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0.부터 2027. 8. 9.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송연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9.부터 2027. 2. 12.까지 휴직을 명함
	"	신은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24.부터 2026. 11. 20.까지 휴직을 명함
	"	이인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24.부터 2027. 8. 23.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준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0.부터 2028. 2. 4.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서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3.부터 2028. 2. 2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소영	2026. 8. 23.부터 2027. 2.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2026. 8. 1.부터 2027. 8.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나연	2026. 8. 22.부터 2027. 2. 1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신유리	"
	인천지방법원 판사	차현경	2026. 8. 3.부터 2026. 8.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허인성	2026. 8. 29.부터 2026. 11. 1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차윤제	2026. 8. 11.부터 2026. 11. 2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이인걸	2026. 8. 11.부터 2026. 8.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정지은	2026. 8. 20.부터 2026. 11. 1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구하경	2026. 8. 8.부터 2027. 12.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황정언	2026. 8. 22.부터 2027.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임여은	2026. 8. 15.부터 2026. 10. 3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4.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현진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6. 8. 24. 자)
"	설승원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6. 8. 1. 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권상표	복직을 명함. 15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6. 8. 14. 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문성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6. 8. 15. 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조연수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6. 8. 5.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강성우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15. 자)
	"	김두홍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15. 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보람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14. 자)
	"	이준민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7. 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주영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20. 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류하나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8. 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구자광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8. 자)
	"	문기선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18.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경선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22. 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나상아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15. 자)
	"	최기원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7. 자)
	"	홍은기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19.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9.부터 2027. 8. 18.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이영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13. 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영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8. 자)
	"	박성경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15. 자)
	"	장윤식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8. 8.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나.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지혜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26. 8. 19. 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동관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26. 8. 22. 자)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리사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8. 22. 자)
	"	양민주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8. 1. 자)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3.부터 2027. 8. 12.까지 휴직을 명함
	"	오대훈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8. 18. 자)
	"	유혜주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8. 8. 자)
	"	이슬아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8. 9.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현진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1. 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현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22. 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 민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18.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홍자경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8. 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차현경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22. 자)
	"	최은령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19. 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나승주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29. 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29.부터 2027.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오지영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2026. 8. 28. 자)
	대구지방법원 판사	나혜선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3. 자)
	대구지방법원 판사	주은영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8. 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정수호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보함 (2026. 8. 22. 자)
	울산지방법원 판사	임미경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7. 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유진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8. 자)
	대전가정법원 판사	김효진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에 보함 (2026. 8. 31. 자)
	광주지방법원 판사	서승범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23.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23.부터 202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한지혜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포함 (2026. 8. 5. 자)

5. 파 견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손주완	2026. 8. 20.부터 2027. 8. 19.까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파견근무를 명함
--------------------------	-----	---

6. 복 귀

가. 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상설사무국)	강지성	복귀를 명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	-----	--

(2026. 8. 20. 자)

■ 인사발령 법 제123호 | 2026. 7. 2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혜	2026. 8. 27.부터 2026. 9.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변지영	"
	"	송중호	2026. 8. 3.부터 2026. 8. 2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신영희	2026. 8. 27.부터 2026. 9.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진세리	2026. 8. 3.부터 2026. 8.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근정	2026. 8. 24.부터 2026. 9. 1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양민호	2026. 8. 24.부터 2026. 9. 2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원용일	2026. 8. 18.부터 2026. 9. 1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훈	2026. 8. 31.부터 2026. 9. 2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재남	2026. 8. 7.부터 2026. 9. 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이정희	2026. 8. 29.부터 2026. 9. 2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문세	2026. 8. 18.부터 2026. 9. 1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노현미	2026. 8. 13.부터 2026. 9. 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임광호	2026. 8. 6.부터 2026. 9. 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경근	2026. 8. 3.부터 2026. 8. 3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영두	2026. 8. 3.부터 2026. 8.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주은영	2026. 8. 18.부터 2026. 9. 1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태호	2026. 8. 18.부터 2026. 9. 1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인사발령 법 제124호 | 2026. 7. 2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및 사법연구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조상민	2026. 8. 20.부터 2027. 2. 1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창구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장영채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강진명	"
	"	김선숙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남승민	2026. 8. 7.부터 2027. 2. 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균	2026. 8. 20.부터 2027. 2. 1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인영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주영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진	"
	"	이유진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문지연	"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인아	2026. 8. 13.부터 2027. 2. 1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안혜미	2026. 8. 23.부터 2026. 12. 22.까지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함

■ 인사발령 법 제125호 | 2026. 7. 2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다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8. 18.부터 202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차현경	2026. 8. 22.부터 2027. 3. 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 발령취소

인사발령 법 제122호(2026. 7. 20. 자) 중 4. 복직 다. 지방법원 판사란의 “인천지방법원 판사 차현경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8. 22. 자)”를 동일자로 취소함

3. 발령변경

인사발령 법 제123호(2026. 7. 21. 자) 중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란의 서울중앙
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세리에 대한 사법연구 발령 기간 부분 “2026. 8. 3.부터 2026. 8. 28.
까지”를 “2026. 8. 3.부터 2026. 8. 30.까지”로 변경함

■ 인사발령 법 제126호 | 2026. 7. 27.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파견(학위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한울	2026. 8. 20.부터 2027. 8. 19.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 교육파견 및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성준	2026. 8. 7.부터 2027. 8. 6.까지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장민주	2026. 8. 20.부터 2027. 8. 19.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고석범	2026. 8. 20.부터 2027. 8. 19.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신태광	2026. 8. 13.부터 2027. 8. 12.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특허법원 판사	송현정	2026. 8. 7.부터 2027. 8. 6.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원진	2026. 8. 7.부터 2027. 8. 6.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석윤민	2026. 8. 20.부터 2027. 8. 19.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여규호	2026. 8. 7.부터 2027. 8. 6.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서민아	2026. 8. 7.부터 2027. 8. 6.까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홍순건	2026. 8. 3.부터 2027. 8. 2.까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순혁	2026. 8. 20.부터 2027. 8. 19.까지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오주훈	2026. 8. 7.부터 2027. 8. 6.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선승혜	2026. 8. 7.부터 2027. 8. 6.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구회생법원 판사	육영아	2026. 8. 13.부터 2027. 8. 12.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성준	2026. 8. 7.부터 2027. 8. 6.까지 프랑스 파리제2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태호	2026. 8. 7.부터 2027. 8. 6.까지 호주 멜버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임미경	2026. 8. 7.부터 2027. 8. 6.까지 미국 UC어바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노을	2026. 8. 18.부터 2027. 2. 17.까지 교육파견기간을 연장함

3.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최석진	2026. 8. 7.부터 2027. 6. 6.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UW) 교육파견을 명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박소연	2026. 8. 7.부터 2027. 6. 6.까지 미국 페퍼다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정종륜	2026. 8. 13.부터 2027. 6. 12.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종완	2026. 8. 20.부터 2027. 6. 19.까지 미국 리치몬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김정운	2026. 8. 20.부터 2027. 6. 19.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신동호	2026. 8. 7.부터 2027. 6. 6.까지 미국 예시바(카도조)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우경아	2026. 8. 7.부터 2027. 6. 6.까지 미국 퍼시픽맥조지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근철	2026. 8. 7.부터 2027. 6. 6.까지 미국 플로리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강태호	2026. 8. 7.부터 2027. 6. 6.까지 미국 볼티모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주영	2026. 8. 20.부터 2027. 6. 19.까지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손혜정	2026. 8. 20.부터 2027. 6. 19.까지 미국 UC어바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훈	2026. 8. 20.부터 2027. 6. 19.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주영	2026. 8. 13.부터 2027. 6. 12.까지 미국 리치몬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장수진	2026. 8. 20.부터 2027. 6. 19.까지 미국 시라큐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최기원	2026. 8. 7.부터 2027. 6. 6.까지 미국 로올라메리마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양소은	2026. 8. 20.부터 2027. 6. 19.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김병훈	2026. 8. 7.부터 2027. 6. 6.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진희	2026. 8. 7.부터 2027. 6. 6.까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황지애	2026. 8. 13.부터 2027. 6. 12.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윤하	2026. 8. 20.부터 2027. 6. 19.까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나.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봉지수	2026. 8. 7.부터 2027. 6. 6.까지 미국 포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인사발령 법 제127호 | 2026. 7. 27.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정기승급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노종찬	16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백대현	15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수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심 판	1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김여경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동희	12호봉을 급함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지영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	차호성	12호봉을 급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남	"
다.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동일	10호봉을 급함
	"	박지현	9호봉을 급함
라. 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조수민	9호봉을 급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진석	8호봉을 급함
	"	최지원	"
	특허법원 판사	송현정	"
	"	임현화	"
마. 지방법원 판사			
	수원가정법원 판사	강나래	10호봉을 급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가정법원 판사	구본웅	10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수한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주영	9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정섭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김규현	"
	부산회생법원 판사	조재혁	"
	창원지방법원 판사	곽리찬	"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수양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서우	8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박예지	"
	인천지방법원 판사 (국제형사재판소(ICC))	김은혜	"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 정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황정현	"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소영	"
	수원가정법원 판사	강수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채은	"
	춘천지방법원 판사	송지현	"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인선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전지은	"
	부산지방법원 판사	길선미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서현	8호봉을 급함
	"	장윤실	"
	"	차민우	"
	부산회생법원 판사	서진희	"
	제주지방법원 판사	주영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수경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동준	6호봉을 급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최오미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양형석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준혁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종원	"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용찬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아란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현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우	5호봉을 급함
	"	신영빈	"
	"	이재준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유지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홍의선	"
	인천지방법원 판사	손용기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
	"	윤상운	"
	"	조연지	"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예림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조성진	5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진영	"
(2026. 8. 1. 자)			



2026. 8. 15. 제1742호
Supreme Court of Korea



9 772951 225009

ISSN 2951-2255

16